

#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청년아동과

제정 2002· 4· 4 규칙 제239호  
일부개정 2015· 11· 26 규칙 제573호  
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21· 3· 22 규칙 제698호  
(제명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·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· 11· 26>

**제2조(시설의 이용)** ① 「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 11· 26, 2021· 3· 22>

②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 할 수 있으며 휴관일 7일전부터 그 사유 및 기간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 11· 26>

**제3조** 삭제 <2015· 11· 26>

**제4조(이용의 제한)**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 11· 26>

1. 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
2.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
3. 그 밖에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

**제5조** 삭제 <2015· 11· 26>

**제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** ① 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청소년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

다. 다만, 수련시설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 <개정 2021·3·22>

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④ 간사는 수련시설 실무책임자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·11·26]

**제7조(운영위원회 기능 및 회의 등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5·11·26>

1.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수련시설의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
3. 자원봉사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

**제8조(자원봉사자)** ①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5·11·26>

1.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
2. 시설, 자료관리,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

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나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1·26>

**제9조(전문강사초빙)** 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1·26>

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11·26, 2021·3·22>

**제10조** 삭제 <2021·3·22>

**제11조** 삭제 <2021·3·22>

**제12조(대장등의 비치)**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

비치하고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11·26>

1. 근무일지
2. 비품대장 및 소모품 대장
3. 자료대장
4. 비치도서목록
5. 그 밖에 필요한 대장

**제13조(보험가입 등)** 수련시설 운영자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25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·11·26]

**제14조(운영세칙)**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시설의 운영자가 정한다. <개정 2015·11·26>

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11·26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·11·26 규칙 제57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·3·22 규칙 제69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신설 2021·3·22>

###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간

(제2조제1항 관련)

시설명	운영시간		휴관일	
			정기	비정기
1. 서희청소년문화센터 (청소년수련관)	평일	09:00~20:00	매주 월요일	1월1일, 설날·추석 전날, 설날·추석 당일, 설날·추석 다음날, 「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에 따 른 대체공휴일
	토·공휴일	09:00~18:00		
2. 창전청소년 문화의 집	평일	09:00~19:00		
	3. 부발청소년 문화의 집 4. 청미청소년 문화의 집	토·공휴일		
방학(1,2,7,8월)				

[별지 제1호서식] 삭제 <2015·11·26>

[별지 제2호서식] 삭제 <2015·11·26>

[별지 제3호서식] 삭제 <2015·11·26>

[별지 제4호서식] 삭제 <2015·11·26>